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의 2018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대구사이버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된 사항 : 별첨

2019. . .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감사 : 조 유 제 

감사 : 공인회계사 안 진 수 

피감사자(임회인)

직명 기획혁신팀장

성명 박 승 희 

지 적 사 항	내 용	처 분 지 시
1.입시수당 회수 및 전형료반환	<p>교육부가 2015.09.16. ~ 2015.09.23.의 기간 동안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 사항 중</p> <p>- 2013.11.27.~2015.09.23. 감사기간 사이에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입시 수당 총 32,175천원중 미회수 6,550천원은 조속히 회수 조치하고 응시생들에게 반환조치대상 전형료 총24,875천원중 미반환금 1,912명 10,196천원에 대해 반환 및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이행을 촉구함</p>	<p>[지시]</p> <p>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p>
2.대구사이버대학교 교사 미확보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p>교육부가 2015.09.16. ~ 2015.09.23.의 기간 동안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법인처분 사항중</p> <p>- 미이행사항(대구사이버대학 교사 미확보)</p> <p>: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를 대구대 교비회계로 보전해 주고자 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577회 이사회(2016.06.21.)에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의 건'을 의결하고 2016.08.17.에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 허가 신청'을 교육부에 올렸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받았음. 2018.06.12. 다시 영광학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와 대구대 교육용 기본재산(건물)간 '용도 변경 및 교환 허가'를 교육부에 신청하였으나 용도 변경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가액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이 필요하나, 법인에서 제출한 보전계획(2024년까지 기부금등으로보존)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06.26.자에 반려를 받음. 새로운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보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할 것임.</p>	<p>[지시]</p> <p>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할 것임.</p>

지 적 사 항	내 용	처 분 지 시
<p>3.대구대학교 교사의 대구사이버대학교 사용에 따른 사용료 전출</p>	<p>교육부가 2015.09.16. ~ 2015.09.23.의 기간 동안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법인처분 사항 중 -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설립전환인가(2008.10.31.)부터 대구대학교 교사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2008학년도~2015학년도 산정 분 668,379천원을 대구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2015년 교육부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음. 그 후 2015학년도에 50,400천원, 2016학년도 50,000천원, 2017학년도 10,000천원을 2018학년도 350,000원을 각각 전출하였으나, 미이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207,979천원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p>	<p>[지시] 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 하여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p>
<p>4.대구사이버대학 기부금의 법인수입액 회수</p>	<p>교육부가 2015.09.16. ~ 2015.09.23.의 기간 동안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법인처분 사항 중 -대구사이버대학 교육용으로 받아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 한 기부금 255,000천원을 대구사이버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처분을 받았음, 이후 2018학년도에 25,500천원을 전출하였으며, 남은 미전출 잔액 229,500천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향후 10년간 총 미행금액의 10%(년간 25,500천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2018.08.23.제출하였으나 상환금액이 미미하다는 등의 사유로 의견수용을 거부당했으며 2019학년도 행정제재로 2019학년도 정원 동결 통지(교육부감사담당관-3642)를 2018.09.04.자로 받은바 있음.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행정제재 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p>	<p>[지시] 교육부 및 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임.</p>